



수탁처리폐수  
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

# MULBARO를 소개합니다





수탁처리폐수  
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

# MULBARO를 소개합니다

## contents

1. 물바로 시스템 소개	04
2. 물바로 시스템 주요기능	06
3. 물바로 시스템 추진경과	07
4. 물바로 시스템 관련법령	08
5. 물바로 시스템 운영성과	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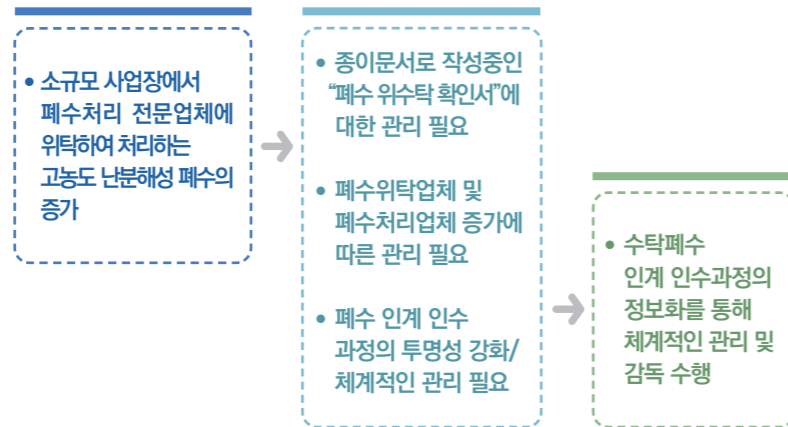
# 1

## 물바로 시스템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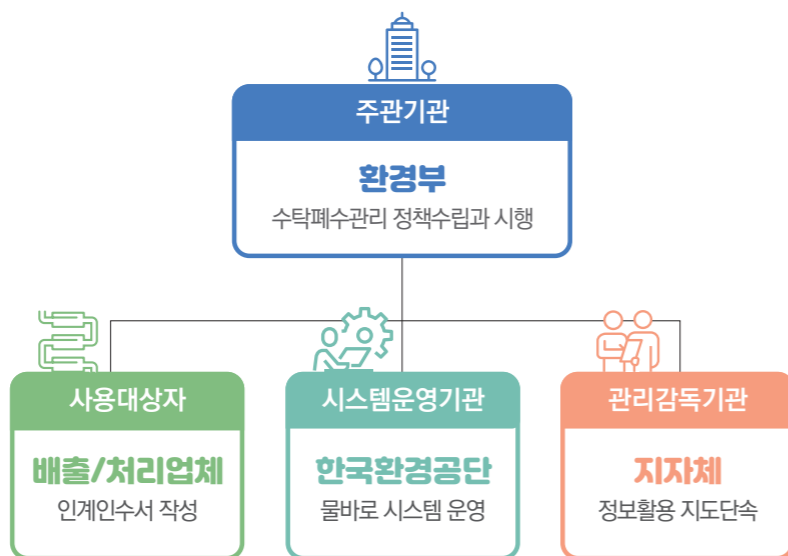
### 시스템 개요

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(물바로 시스템)은 폐수 배출자(위탁자)와 처리자(수탁자) 간 위탁폐수의 인계 인수와 운반, 처리과정을 전자 인계인수서로 관리하는 IT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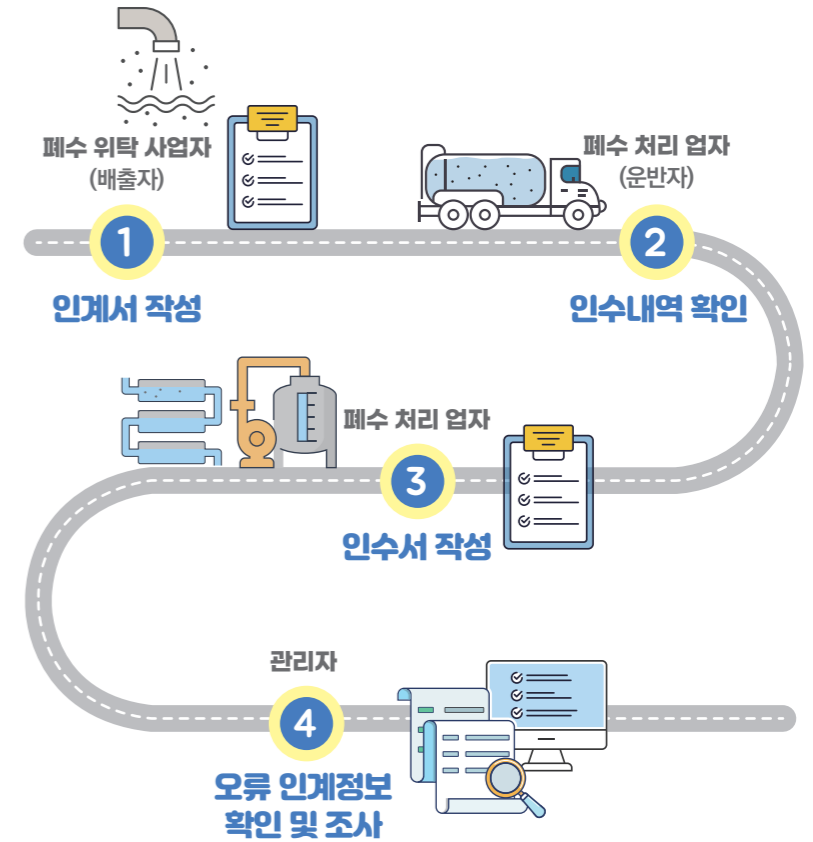
### 도입배경



### 추진체계



### 전자 인계인수서 작성 흐름도



### 사용자

폐수위탁사업자 (배출자)	폐수처리업자 (운반자)	폐수처리업자	관리자 (환경부, 지자체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탁계약현황 입력</li> <li>• 인계서 작성 (폐수 인계 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자인계서 실시간 작성 (모바일 서명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운영정보 입력</li> <li>• 전자인수서 작성 (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오류인계정보 확인 및 조사</li> <li>• 전자 인계인수서 확인 및 조사</li> </ul>

# 물바로 시스템 주요기능

## 주요기능

-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 현황 기초정보 관리
- “폐수 위수탁 확인서” 및 기타 관련 문서의 전자화를 통한 폐수 인계 인수 정보 관리
-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인계서 작성 기능
- 폐수처리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처리 실적 및 통계분석 가능
- 관리 및 감독기관 지원을 위한 인계 인수 정보 및 실적 정보 관리 및 제공



# 물바로 시스템 추진경과



## 물바로 시스템 관련법령

### 법을 근거

####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

(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)

-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(이하 “수탁처리폐수”라 한다)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(이하 “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폐수위탁사업자”라 한다)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[ 본조신설 2018.10.16 ]

####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9조의3

(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

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 11. 24.>

1. 폐수처리업자의 상호, 소재지,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2.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, 소재지,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3.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(이하 “수탁처리폐수”라 한다)의 종류, 단위 및 수량
4.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

[ 본조신설 2019. 10. 15. ]

###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92조의2 (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 입력)

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9. 10. 17.]

#### ◆◆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21의2] <신설 2019. 10. 17.> ◆◆

#####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(제92조의2 관련)

1.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
  - 가. 컴퓨터
  - 나. 이동형 통신수단
  - 다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장비
2.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을 지체 없이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, 사용자는 장애 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·인수 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해야 한다.
3.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기한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  - 가. 인계내역 입력 : 폐수를 위탁하기 전까지. 다만, 인계내역을 입력하려는 자가 수탁처리 폐수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인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인계 내역을 확정하여 입력해야 한다.
  - 나. 인수내역 입력 : 폐수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
4. 그 밖에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에 폐수의 인계·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## 행정처분

### 6개월 이내 영업정지

#### 물환경보전법 제64조 (허가의 취소 등)

-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
- 5.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15) 폐수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은 경우	법 제64조	경고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2개월
16) 폐수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	법 제64조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

[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] 사.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기준

###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## 물환경보전법 제82조 (과태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4의2.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

(단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퍼. 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	법 제82조 제3항 제4호의 2	50	70	100

[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8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85조 관련)

## 5

## 물바로 시스템 운영성과



### 통계관리 용이

종이 인계서의 전자 정보화로 모든 사업장의 정보 및 폐수종류, 폐수량 등 통계관리



### 폐수처리 관리강화

수탁폐수의 이동 경로와 폐수 중량변화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불법 처리 예방



### 효율적 행정처리

수탁폐수의 정보 확인용이 및 체계적인 관리로 효과적 정책지원

